

# 검 토 보 고

1997. 3. 17  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 출 : 1997년 2월 21일

○ 회 부 : 1997년 2월 22일

## 3. 제안이유

- 국내여비규정 개정 ('96. 12. 31) 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

## 4. 주요골자

- 여비의 종류중  
- 현지교통비를 일비로, 가족이진비를 가족여비로 함

## 5. 검토보고

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, 본 개정조례(안)은

- '96. 12. 31일 개정된 (대통령령인)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